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중 소 기 업 청 장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12307호, 2014. 1.21 공포, 2014.  
7.22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 정의(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 1) 중견기업 범위에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라는 법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에 준하는 외국법인 포함)에 속하는 기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2조제1항)
-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 유예기간에 속하는 중소기업, 업종별 매출액이 기준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100분의 15이상이거나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이 100분의 2이상인 기업으로 규정(안 제2조제2항)

나. 성장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 및 제4조)

- 1)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공고토록 규정(안 제3조)
- 2)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토록 하고,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를 위해 관계기관 협조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법에서 위임한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1) 수·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이 6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규정(안 제5조)
- 2)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제한에서 제외되는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이 1천 5백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안 제6조)

- 3)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규정(안 제7조)
- 라. 세계적 유망기업 선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 기준, 예비기업 발굴근거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
- 마. 중견기업 실태 및 통계조사를 위하여 조사방법 및 절차, 결과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9조)
- 바. 중견기업 확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확인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 사. 중견기업연합회 운영 및 감독을 위하여 중기청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사무에 관한 지도·감독 및 서류제출 등을 규정(안 제11조)
- 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업무의 위탁사항을 규정(안 제12조)
- 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 3. 의견제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중견기업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전화 : 042-481-6813, Fax : 042-481-6829)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견기업의 범위 등)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에 준하는 외국법인 포함)에 속하는 기업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을 영위하는 기업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제외)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견기업 후보기업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에 속하는 중소기업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100분의 15이상이

거나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이 100분의 2이상인 기업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시행 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 범위) 법 제13조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법 제2조에 속하는 중견기업 중에서 최근 3개년도의 평균 매출액이 6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다.

제6조(대기업인 이력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 범위) 법 제14조에 따른 대기업인 이력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법 제2조에 속하는 중견기업 중에서 최근 3개년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 5백 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기업승계지원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 법 제15조에 따른 기업승계지원 특례대상에 포함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법 제2조에 속하는 중견기업 중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다.

제8조(유망기업 선정 및 지원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세계적 유망 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시장·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종합성
2. 기업 역량의 우수성
3. 목표의 명확성·적정성·달성가능성
4. 전략·실행계획의 도전성과 창의성
5. 기업 및 대표자의 기업가정신
6. 비전·목표의 달성 가능성
7. 그 밖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혁신 역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중소기업청장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계적 유망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계적 유망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예비기업을 발굴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계적 유망기업 선정 및 예비기업 발굴, 지원절차 및 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견기업의 성장부담 요인, 수·위탁거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2.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연구개발, 해외진출, 고용 및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견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실태조사 실시 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 표본설계,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3.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③ 실태조사는 매년 4월 1일 기준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기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방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연합회 운영 및 감독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류 등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3조에 따른 전담기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세계적 유망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견기업 후보기업 업종별 매출액 기준(제2조 제2항 관련)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B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C10	매출액 700억원 이상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E		
건설업	F		
	G		
제조업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550억원 이상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기타 제품 제조업	C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H		
운수업	J		
	M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N	매출액 400억원 이상	
	Q		
	R		
	S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I	매출액 300억원 이상	
	L		
	P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증견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	300	400	500